

이 조례 및 규칙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1년 10월 8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##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돌봄SOS, 아동학대조사, 지하안전관리 등 신규 행정수요 전담인력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1)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조정 (안 제2조)

-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: 1,250명 → 1,272명(증 22)
- 집행기관의 정원 : 1,225명 → 1,247명
- 의회사무과의 정원 : 25명

2)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(안 제4조, 별표3)

- 총계 : 1,250명 → 1,272명(증 22)
- 일반직 계 : 1,242명 → 1,264명(증 22)
- 6급이하 계 : 1,174명 → 1,196명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행정지원과장,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(예관동)), 문의전화:3396-4512, FAX:3396-8603, 메일:agiwana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첨부 : 1.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 
2. 신·구조문 대비표 각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 본문 중 “1,250명”을 “1,272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1,225명”을 “1,247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 표 3] (제4조 관련)

###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

| 기관별<br>직급별 | 총 계   | 본 청 | 의 회<br>사무과 | 직 속<br>기 관 | 동  |
|--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|
| 총 계        | 1,272 | -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|
| 정무직 계      | 1     | -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|
| 구청장        | 1     | 1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|
| 일반직 계      | 1,264 | -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|
| 3급         | 1     | 1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|
| 4급         | 6     | 5   |            | 1          |    |
| 5급         | 59    | 30  | 1          | 13         | 15 |
| 6급 이하 계    | 1,196 | -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|
| 전문경력관 계    | 2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|
| 별정직 계      | 7     | -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|
| 5급 상당      | 3     | 1   | 2          |            |    |
| 6급 상당 이하 계 | 4     | -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|



# 비 용 추 계 서

(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

## 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: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확대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1차년도는 기편성된 인건비 내에서 운용
- 2차년도는 9급(간호직 8급) 신규공채 채용(22명) 인건비분 산정
- 2차년도 인건비 산정시 2021년 기준대비 1.4% 증액 산정
- 3차년도부터는 '22년 공무원임금 인상률인 1.4% 일률 적용
- 직급별 임금기준액은 '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산출
- 돌봄SOS 사업 증원 인력(20명)은 시비 보조 75% 지원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| 연도          |       | 1차년도<br>(2021년) | 2차년도<br>(2022년) | 3차년도<br>(2023년) | 4차년도<br>(2024년) | 5차년도<br>(2025년) | 합계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구분          | 세입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 | ○ 시비  | -               | 450,000         | 456,300         | 462,688         | 469,166         | 1,838,154 |
|             | 소계(a) | -               | 450,000         | 456,300         | 462,688         | 469,166         | 1,838,154 |
| 구분          | 세출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 | ○ 인건비 | -               | 682,933         | 692,494         | 702,189         | 712,019         | 2,789,635 |
|             | 소계(b) | -               | 682,933         | 692,494         | 702,189         | 712,019         | 2,789,635 |
| □ 총 비용(a-b) |       | -               | -232,933        | -236,194        | -239,501        | -242,853        | -951,481  |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| 연도 |       | 1차년도<br>(2021년) | 2차년도<br>(2022년) | 3차년도<br>(2023년) | 4차년도<br>(2024년) | 5차년도<br>(2025년) | 합계        |
|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구분 | 국비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|
|    | 시비    | -               | 450,000         | 456,300         | 462,688         | 469,166         | 1,838,154 |
| 구비 | 지방세수입 | -               | 232,933         | 236,194         | 239,501         | 242,853         | 951,481   |
|    | 세외수입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|
|    | 지방채 등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|
| 민간 |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|
| 기타 |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|
| 합계 |       | -               | 682,933         | 692,494         | 702,189         | 712,019         | 2,789,635 |

## Ⅱ 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- 1차년도(2021년) : 해당없음
- 2차년도(2022년) (682,933천원)
  - 신규공무원 인건비 :  $(673,503\text{천원} \times 22\text{명}) \times 1.4\% = 682,933\text{천원}$
  - '21년 9급(간호직 8급)인건비 적용 후 '22년 임금 상승률 적용
- 3차년도(2023년) 이후 : 2022년 공무원 임금 상승률 1.4% 일률적용